



발언대

농약빈병

수거목표량 책정기준 바꿔야 한다

평균 수거실적률 감안, 적정 수거목표량 세워야

업무부

86년도 농약빈병수 거제도 탄생 수거단가 인상·농협 분담기관 제외

농약빈병수거사업은 농약공업협회가 창립된 직후부터 수집대행업자지정, 제조회사별 책임수거지역제 등 다양한 수집체계를 거치면서 변경되어 왔다. 지금의 한국자원재생공사 중심의 유상수집체계는 그동안 민간차원의 수집체계로는 농약빈병의 효율적 수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촌환경 정화도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경제기획원이 주관한 수차례의 농약빈병회수 촉진방안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거쳐 1986년9월 26일 최종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수집주체가 돼 수거 및 운송을 담당하고 △홍보, 시상은 환경청이 담당하며 △농약빈병 수거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운영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토록 했다. 또한 농약빈병 수거에 필요한 △보상금액 9억4

천5백만원은 국고 30%, 지방비 30%, 농약공업협회 30%, 농협 10%씩 분담하고 △농약빈병의 개당 보상금은 30원(당시 소주병 1개의 빈병보증금이 30 원이었음)으로 3천1백50만개를 수집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10년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바뀐 것은 농약빈병 1개당 보상단가가 1993년에 40원으로 1994년에는 5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과 1994년부터 농협이 분담기관에서 빠짐으로서 농약공업협회가 그 부담을 안게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오랜기간동안 이 제도를 시행해 온 결과 우리농촌에 무관심속에 방치된 농약빈병을 다량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농촌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거실적 부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집단가 개당 50원과 kg당 150원 개념

정부가 1986년에 농약빈병 1개당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한 결정은 어떠한 이론적 또는 경제적 분석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당시 소주병 1개의 빈병 보증금이 30원이었던 것을 준용한 것이다. 또한 kg당 90원의 보상금은 당시 많이 생산되던 300ml용량의 농약 유리병 1개의 무게를 300g으로 볼 때 3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가격을 기본으로 2차례의 인상을 거쳐 현재 개당 50원, kg당 150원에 농약빈병을 수거하고 있다.

한편 이 제도를 채택할 당시 국내 농약용기는 유리병을 위주로 공급했고 합성수지용기는 농약의 유기용매에 의한 변형 유발 등으로 사용실적이 미미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없었다. 그러나 국내 기술의 발달로 Pet병등 종래 합성수지병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한 다층합성수지용기의 공급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따라 농약업계에서는 취급 및 운송면에서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물동량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층합성수지병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1994년 12.6%에서 96년도에는 농약병 총사용량의 3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1).

농약병의 수량과 중량의 증감을 보면 수량은 1987년 6천4백만개에서 1996년은 6천7백6십만개가 출하되어 5.6%가 늘었다. 하지만 농약회사의 합

성수지병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중량개념으로는 1만9천3백톤에서 1만4천7백톤으로 오히려 23.8%가 줄어들었다. 이와같이 합성수지병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물동량이 매년 큰폭으로 줄고 있으므로 수거 비용도 줄어야 하지만 보상금 예산은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적정한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산출기준을 「수량기준에서 중량기준」으로 전환하여 국고 및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목표량 과다책정 보상금 가중

모든 상품이 제조회사 공장에서 출하되었다고 해서 전량 소비자가 사용하였다고 말할 수 없듯이 일반적으로 농약도 회사 출하량의 40%정도는 시중(유통) 재고로 남아 있고 60% 정도만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가 수집실적을 평가할 때는 흔히 출하량 또는 목표량의 몇 퍼센트밖에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수집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하게 된다. 이는 수집률이 저조하여 농약빈병이 농경지에 방치되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목표량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량 달성을 어려움이 많은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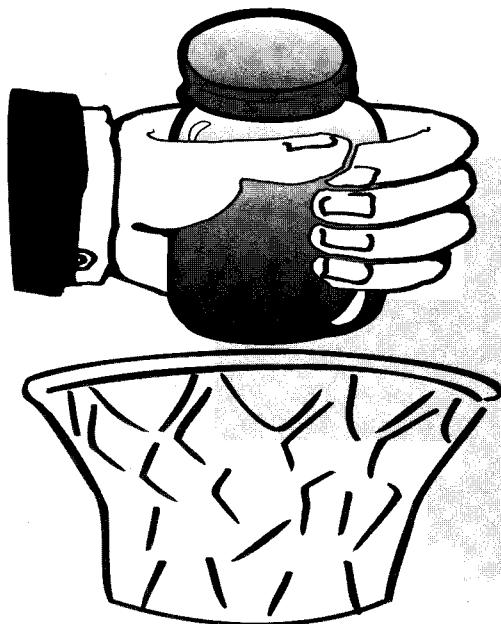
다시말해 시중재고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즉 단

표 1. 농약병 재질별 출하

구 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계 (증 량)	64,083 (19,340)	62,748 (18,617)	64,354 (19,526)	74,024 (22,474)	81,767 (25,018)	74,408 (22,640)	72,013 (21,200)	69,736 (20,216)	70,142 (15,821)	67,623 (14,664)
유리병(A)	61,735	59,145	61,700	71,246	78,401	69,748	65,497	60,951	46,787	44,201
합성수지병(B)	2,348	3,603	2,654	2,778	3,366	4,660	6,516	8,785	23,355	23,422
비율(B/A)	(3.7)	(5.7)	(4.1)	(3.8)	(4.1)	(6.3)	(9.1)	(12.6)	(33.3)	(34.6)

* 출하 병수는 조금씩 늘었지만 중량은 매년 큰폭으로 줄고 있음.

(87→'96: 수량 5% 증, 중량 25% 감)



의년도 농약병 수거사업계획은 사업목표량을 정할 때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출하량의 평균수거실적 비율인 60%선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수거보상금 요율도 개당 50원에서 중량인 kg당 150원으로 바꾸어 병규격 및 새병 구매가격에 대한 부담비율의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순히 출하량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어쩌면 회수실적률이 낮은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집목표량을 책정할 때 그 기준을 단순히 출하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출하량의 평균수거실적률을 감안하여 책정한다면 실제 사용한 양에 가까운 용기를 회수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업목표량 책정상황을 보면 1987년도는 출하량의 60%를 수집목표로 삼았던 것을 1996년도에는 출하량의 82%까지 높혀 잡았기 때문에 수거실적률은 초년도에 비하여 월등히 낮아졌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 평균수거실적은 출하량의 63%, 목표량의 94%에 이르고 있으나 1994년 이후에는 80%이상 까지 목표량을 과다하게 설정하여 평균 수거실적이 출하량의 62%, 목표량의 83%

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는 업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수거율 저조라는 부정적 시각을 받게 된 것이다.

1996년 한해만 보더라도 농약병 공급량 6천7백62만개의 84%인 5천7백6만개를 수집목표로 과다 책정함으로써 그간의 공급량 대비 평균 수집실적인 60%에도 못미치는 56%, 즉 3천7백62만개를 수집하여 목표량의 66%밖에 수거치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시중재고를 감안하지 않고 목표량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보상금 예산액 28억5천3백만원중에서 실질적으로 수거한 3천7백62만개에 대해 지급한 금액(개당 50원)은 18억8천만원으로서 약 9억7천여만원을 초과부담했다는 이야기가 된다(표 2).

이와같은 과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차년도 사업목표량을 세울 때에 「평균수거실적률을 감안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한다면 수거율 저조나 과도한 예

표 2. 연도별 농약병 공급 및 수집현황

(수량:천개, 금액:백만원)

구 분	'87	'88	'89	'90	'91	'92
출하량(A)	64,083	62,748	64,354	74,024	81,767	74,408
수거목표량(B)	38,000	40,000	42,000	46,750	48,180	51,750
비율(B/A)	(59.3)	(63.7)	(65.3)	(63.2)	(58.9)	(69.5)
수거량(C)	34,510	37,636	40,502	44,651	47,116	48,923
비율(C/B)	(90.8)	(94.1)	(96.4)	(95.5)	(97.8)	(94.5)
(C/A)	(53.8)	(60.0)	(62.9)	(60.3)	(57.6)	(65.7)
부담금(예산)	945	1,200	1,260	1,403	1,445	1,553

구 분	'93	'94	'95	'96	누 계	'97(P)
출하량(A)	72,013	69,736	70,142	67,623	700,898	70,142
수거목표량(B)	57,230	57,060	57,060	57,060	495,090	57,060
비율(B/A)	(79.5)	(81.8)	(81.3)	(84.4)	(70.6)	(81.3)
수거량(C)	53,451	50,616	46,293	37,623	441,321	-
비율(C/B)	(93.4)	(88.7)	(81.1)	(65.9)	(89.1)	-
(C/A)	(74.2)	(72.6)	(66.9)	(55.6)	(63.0)	-
부담금(예산)	2,289	2,853	2,853	2,853	18,654	2,853

산책정을 함께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도 단순히 출하량 대비만을 수거율로 인식하여 수거율 저조라는 보도를 지양함으로써 관계자 및 농민, 소비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조타수(操舵手) 역할을 해 줄것을 기대한다.

수거보상금 부담 공평성 기해야

현재 농약병은 20ml부터 5l 까지 10여종류의 병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에서 다용(多用)되고 있는 용기는 500ml, 300ml, 100ml, 20ml 순이다. 농약회사에서 구입하는 개당 가격을 보면 1997년 기준으로 500ml 120원, 100ml 35원, 20ml 25원으로서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액은 일률적으로 개당 50원으로 되어있다. 500ml는 구매가격의 42%를 지불하고 20ml는 무려 200%나 지급(농약업계 부담분 개당 20원으로서 500ml는 17%, 20ml는 80%)하고 있다.

이것은 폐기물예치금 규정에 의한 500ml이하의 유독물용기 부담금 개당 6원이 새병 구매가격 120원의 5%인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서 병 구매가격보다 수거된 빈병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은 농약병뿐이라는 기현상을 초래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타업종의 새병값 대비 부담금 요율을 감안하여 농약병 규격에 따라 일정비율을 보상금으로 정하여 업종간은 물론 구매가격 대비 부담률에서 형평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익년도 농약빈병 수거사업계획은 사업목표량을 정할때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출하량의 평균수거실적 비율인 60%선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수거보상금 요율도 개당 50원에서 중량인 kg당 150원으로 바꾸어 병규격 및 새병 구매가격에 대한 부담비율의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농약정보